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94-45호)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공사종류의 세분화,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행정쇄신 및 행정규제완화 과제로 채택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골자

- 가. 안전관리비 사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안전 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로 구분함(제 2조 및 제12조)
- 나.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요율표에 의하여 5개 종류로 구분하고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을 낮게 함(제4조, 별표 1)

- 다.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 자기공사자로 하고, 설계변동 등으로 대상 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토록 함(제5조)
- 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6개항으로 분류 구체화하고 항목별 총비율을 150%로 하여 현장특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최소사용기준을 규정함(제8조, 별표 2, 별표 3)
- 마.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또는 미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된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토록 하고, 실행예산 집행시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함(제11조)

부록 1

- 아. 수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
- 자. 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토록 함(제14조)
- 차. 기술지도에 관한 수수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정하도록 함(제15조)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45호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조(건설공사의 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사업 종류 예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 5 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 7 조(수급인의 의무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찰률로 본다.

②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목적외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

부록 1

를 준용한다.

- 제11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2조(기술지도) ① 전담기술지도는 월1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는 매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당해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전국 도서지방(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한다)은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제외),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로 구분된다.

제13조(기술지도 계약) 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

야 하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사현장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담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는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
2. 정기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는 안전관리비의 30퍼센트

⑤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 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시에는 법, 영, 규칙,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의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3

부록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에 대한 수수료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별표 1)

기준을 기초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노동부 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주)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천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천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단독발주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관리비총액의 40% 이하

부록 1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기본급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가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안전시설비 등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각종 안전입간판 및 표지표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랜턴(신호등), 차량유도등 및 위험경보기 등의 경보설비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안전관리비총액의 40% 이하

부록 1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리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동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폐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신호수용 반사조끼, 용접용 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 등 유해작업장 환경측정장비에 소요되는 장비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부록 1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행사비(연 2회 이하), 포상비, 각종 서식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의 전 강진단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 의 10% 이하

주)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확·포장, 철도보수공사 등), 자재정리 및 폐자재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냉온방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비용

—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 등)

—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의 합계는 150% 이하이나 이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여 100%를 사용하라는 것이며, 해당 항목별로 제한된 사용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음.

(별표 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20%	40%	60%	80%	100%
사용기준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간값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부록 1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 공정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	원 (안전관리비 × 공정율)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제출자 직책 성명 (인)

부록 1

(뒷면)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

부록 1

[별지 제2호 서식]

(접담: 정기) 기술지도 계약서

기 위 탁 술 사 지 업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화번호	
도장	발주자	주소	성명 또는 기관	
기 전 술 문 지 기 도 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구분		(순수건설, 전기, 전기통신) 공사		
기술지도횟수		()월 1회, 총()회		
수수료				
계약기간		공사기관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노동부 고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 정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키로 한다.

월일

위탁자	사업장명 :
	대표자 :
건설재해예방	명 칭 :
전문기관	대표자 :

부록 1

[별지 제3호 서식]

(전담, 정기)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주소	성명 또는 기관	
계약체결일자		기술지도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전담, 정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 명 칭 :

방전문기관 대표자 : (인)

부록 1

(참고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

—고시 제4조(공사의 분류) 관련—

건설공사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도급 또는 직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측량, 설계, 감독 등을 행하는 사업과 토목건축업자 등이 금속, 비금속, 석회석 또는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시굴, 간도굴진작업 또는 쟁내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등을 주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제외)

건설공사는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공사를 지칭 한다.

1.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2. 토지, 항로, 유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
3.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또는 이설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및 기계장치, 도로 신설 등의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1. 건축건설공사

-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주택, 축사(畜舍),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驛舍)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畜舍)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금탕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吹付) 방수공사
 -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에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 건물내의 아이스 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造園) 등의 기타 전문제공사
- 교량건설공사

부록 1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既設) 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
- 선창(船艙)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의 시설공사

2. 도로신설공사

- 도로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既設) 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砂利撒布) 공사 포함)
-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와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로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포함)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렛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

- 포(砂利撒布), 잔디붙이기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제방, 제방수문, 통문(桶門), 갑문 등 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礦毒), 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砂防) 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40101세목(細目)의 고방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 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흡관, 지중선, 동재(銅材)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帶土沙)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跨線橋)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 풍동(風洞)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부록 1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酸洗淨)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 후 각 사업세목(後各事業細目)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1. 기계장치공사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 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 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機械臺) 건설 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電氣收塵機),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 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索道)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修理) 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酸洗淨) 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
-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중건설공사

1.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排砂口),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 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 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부록 1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 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 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 (댐)신설공사 및 터널 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수구(排砂口), 가제방, 골재 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기(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터프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정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 시설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

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삽도건설공사

3. 터널신설공사

-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개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 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砂理)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터널신설공사
-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철,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1.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다만,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로 분류)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跨線橋),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는 4,000만

부록 1

원 미만의 터널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교량신설공사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 다만, 구역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공사는 일반 건설공사(갑)에 분류

주)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의 일반건설공사(갑)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하며, 단독발주공사에 한함(단독발주가 아닌 경우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 건설업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방심하면 산업재해
조심하면 안전작업